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82
----------	------

발의연월일 : 2012. 12. 13.

발 의 자 : 조해진 · 조현룡 · 김희정
이우현 · 김한표 · 이군현
정문헌 · 류지영 · 김태흠
정우택 · 김정록 · 민병주
의원(12인)

제안이유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이용·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본과 다름없는 복제본의 습득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는 등 종전과는 상이한 저작권 환경이 대두됨에 따라 종전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선하여 고도화·투명화·효율화된 저작권집중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집

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종전의 개념을 종합하여 저작권집중관리업을 도입함으로써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와 인력·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 다.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자료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
- 사.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게 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 아.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령위반, 회계부정(會計不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자. 보상금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차.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관보(官報) 및 정보통신망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22조).

- 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안 제25조).
- 타.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재정(裁定)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 및 재정 기능을 신설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파.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복수인 경우라도 신속하게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이용료등의 징수·분배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재산권과 이와 관련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저작권 문화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실연자(實演者)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저작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신탁받거나 대리(간접대리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이용허락 권리를 포함한 관리권한을 위탁받아 이용허락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보상금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고 「저작권법」 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확대된 집중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관리권한이 없더라도 위탁관리중인 저작재산권등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저작재산권등의 이용허락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5.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고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등으로부터 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이용허락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위탁받아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저작권대리중개업자”란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이용자대표”란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단체의 구성원의 수 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비중 등에 비추어 이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저작권 관리에 관하여 「저작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저작권집중관리업

제1절 허가 등

제4조(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 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신청서
2. 집중관리를 위탁한 저작재산권자등 및 관리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등의 목록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의 정관(定款)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목적이 저작권집중관리를 위한 법인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조직 및 전산설비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저작권 관리로 발생하는 이용료 분배와 같은 저작권집중관리업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을 것
4. 저작권집중관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이 적절할 것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 및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승계)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합병(合併)하거나 분할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업무

제8조(대의원총회등) ①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여 저작권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임원)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중에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 및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이사·감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저작권법」 또는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이용내역서의 제출과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신고등)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업

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권 위탁계약 약관(約款)
2.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3. 저작권 이용료 징수규정
4. 저작권 이용료 관리규정
5. 저작권 이용료 분배규정
6. 수수료 규정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 징수규정에 관하여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협의 및 재정(裁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신고 및 시정·보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로 인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영 등의 공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2.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사업연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사업보고서
4.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5. 감사의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4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재산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위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

재산권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에는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이용계약과 저작권 이용료 징수·분배 등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른 통합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매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감독

제15조(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소속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또한 그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및 시정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저작권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會計不正),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재산권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정지 및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임직원의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이용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4.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 및 제6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 집중관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및 제4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다만, 승계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그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상금관리단체 등의 지정

제1절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20조(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및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관리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관리 업무규정

가. 보상금 징수규정

나. 보상금 관리규정

다. 보상금 분배규정

라. 수수료 규정

3. 그 밖에 보상금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일 것

2. 보상권리자를 대표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보상금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관리단체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보상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보상금 관리 업무규정, 지정조건 및 지정의 유효기간·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상금관리단체의 권한 및 의무 등) ① 보상금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의 보상금을 포함하여 징수·관리·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관리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②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이 해당 보상권리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관리단체는 공정한 보상금 관리를 위하여 그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보상금액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창작 진흥 및 보급에 이바지 하는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상금관리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의 현황 및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에 관하여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분배의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및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의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와 감독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보상금관리단체”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보상금관리 업무규정”으로, “저작권집중관리업”은 “보상금 관리업무”로, “이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

제2절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24조(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권등(외국인의 저작권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수행할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어문저작물 저작권자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권
2.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의 공연권·공중송신권 또는 노래반주기 등에의 복제권
3. 학술논문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4. 그 밖에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제1항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대된 집중관리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지적재산권자등을 포함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규정
 - 가.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 나.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징수규정
 - 다.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관리규정
 - 라.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분배규정

마. 수수료 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권리별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대표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분배 등) ①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의 권리를 이용허락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이 그 저작재산권등의 관리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관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공정한 이용료의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포함한 이용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이용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창작 진흥 및 보급에 이바지 하는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라 관리가 중단된 내역, 분배되지 아니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현황 및 분배되지 아니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을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 관리의 중단, 이용료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미분배 이용료 현황등의 공시, 이용료 분배 공고 및 미분배 이용료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업무와 감독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는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규정”으로, “저작권집중관리업”은 “확대된 집중관리업”으로, “이용료”는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로 본다.

제4장 저작권대리중개업

제27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한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준용)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업무 및 감독에 관하여는 제7조,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5조,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6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3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저작권대리중개 업무규정”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9조(이용료 등에 관한 협의)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보상금관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저작재산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대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이용료 및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대표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협의의 개시 또는 재개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이용료 등에 관한 재정) ①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협의를 요청한 이용자대표 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31조에 따른 저작권이용료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에 이용료나 보상금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건이 재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협상에 맡기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으로 재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을 하기에 앞서 조정(調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조정절차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재정절차가 종료된다. 이 경우 조정조서의 작성 및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17조를 준용한다.

⑤ 재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재정위원회는 재정 중 이용료나 보상금의 요율이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대표는 재정위원회가 제시한 이용료나 보상금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제7항에 따른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재정위원회의 재정 중 이용료나 보상금의 요율이나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으로 그 요율의 변경이나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조정절차 및 불복절차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재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0조에 따른 이용료와 보상금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통합전산망의 구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 등을 위하여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변호사법」에 대한 특칙)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자등과의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위탁자인 저작재산권자등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형사고소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4조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0조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보상금관리업무를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20조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24조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24조의 지정을 받은 자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관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중단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관하여 대리·중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저작권관리업무규정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4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6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이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과태료를 받은 사

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到來)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제 27조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상금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제76조제2항·제76조의2제2항·제82조제2항·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해당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7조(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영업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권관리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한다.

②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제27호,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31조제6항, 제51조, 제7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2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8 다음의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삭제한다.

제105조부터 제1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제2호중 “제105조제6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2조제3호, 제137조제4호 및 제138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0조제2호 중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0조제5호”를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 제32조(통합전산망의 구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등을 위하여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동 제정안에 따라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연평균 10억원 미만이므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따라 동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가. 통합전산망의 기능

제정안에서 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목적을 (1)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과 (2)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통합전산망의 기능

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 또는 대리의 방법으로 이용허락 권리를 포함한 관리권한을 위탁받아 이용허락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를 집중 관리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저작재산권자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간

또는 저작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간 발생한다.

그런데 제정안 제14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에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¹⁾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간의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정안 제14조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문서 교부 또는 설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합전산망이 저작재산권자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간의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기능으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례²⁾를 접수·저장하거나 관리하는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관리되는 이러한 사례는 제정안 제15조(감독)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감독할 경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합전산망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간의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에 게시판 등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된 불편사항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간의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통합전산망의 기능은 이용자에게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소개하고 집중관리 중인 저작권 및 이용률 등을 소개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을 통하여 영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용자 또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작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간의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된 통합전산망의 기능은 저작권관리집중단체 및 이들 단체가 관리하는 저작권 등과 관련 이용수수료 등에 대한 소개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능은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공지 등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1) 제정안 제11조(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신고등)에서 업무규정에 저작권 위탁계약 약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정안 제16조(징계 및 시정요구)에 규정된 징계 및 시정요구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음.

(2)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를 위한 통합전산망의 기능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 등을 투명하게 징수·분배하는 경우에 통합전산망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단 또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 이용료 등을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불투명하게 징수·분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제정안 제16조(징계 및 시정요구) 또는 제17조(업무의 정지 및 과징금) 등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합전산망은 불투명한 사례를 접수·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 이러한 경우 홈페이지의 게시판 정도의 기능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비용

이상의 논의에서 제정안 제32조(통합전산망의 구축)과 관련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을 저해하는 사례 또는 민원과 이용료 등을 불투명하게 징수·분배하는 사례 또는 민원을 접수·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홈페이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하다. 필요한 하드웨어로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1대, WAS 서버 1대, 데이터베이스 서버 1대 등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대상으로는 사례 또는 민원을 접수·관리하는 게시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현황정보 및 기타 공지사항 등이 될 것이다. 이외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검색시스템 등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하드웨어 구매에 7,500만원~8,0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4,000~5,000만원,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으로 1억원 등 총 2억 3,000만원 이내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통합전산망 전담인력 소요비용

이상의 논의에서 제정안에서 규정한 통합전산망의 기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

현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에는 별도의 전담인원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소요비용을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김 태 완

(02-788-4649, tanzania@assembly.go.kr)